

정정신고(보고)

2023년 10월 4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일괄신고서

삼성뉴딜코리아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0. 6. 12

3. 정정 사유

- 정기 결산으로 인한 갱신(위험등급 분류기준 변동, 표준편차 기재, 재무정보 확정)
-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및 문구 명확화
- 기업공시서식개정 반영

4.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정 전	정정 후
요약정보			
투자실적 추이 운용전문인력 투자비용	작성기준일 업데이트	-	업데이트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	작성기준일 업데이트	-	업데이트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정기 결산으로 인한 갱신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투자위험등급을 산정하였습니다. 설정 후 3년이 경과시 실제 수익률 변동성으로 등급분류기준이 변경되면서 위험등급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 자체 투자위험등급 기준> 주1) "고위험자산"은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투자위험등급을 산정하였습니다. 추후 매 결산 시마다 수익률 변동성을 다시 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 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위험등급 기준표(연환산 표준편차 기준)> 주1) 실제 변동성은 매년 결산시점에 측정하며, 해당 결산일 기준 이전 3년(156주)간 펀드의 주간 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와 동급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p>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주2) "중위험자산"은 채권(BBB-등급 이상), CP(A3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주3) "저위험자산"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주4) 해외투자펀드는 국내펀드 분류기준을 준용하되 환해지여부, 투자국가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위험등급을 조정함 주5) 위에 명시되지 않은 펀드의 위험 등급은 투자대상, 손실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내부 심의위원회에서 정함 주6) 설정 후3년이 경과시 실제 수익률 변동성으로 등급분류 기준이 변경되면서 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p>	<p>기준표상의 표준편차 상한치를 비교합니다. (종류형집합투자지구인 경우 해당 운용펀드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산정) 주2) 이 투자신탁의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실제 연환산 표준편차는 19.73%입니다. 주3) 추후 매 결산시마다 변동성을 재측정하게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 이 투자위험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p>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정기 결산으로 인한 갱신	<p>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단위: 원)</p>	<p>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업데이트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단위: 원) - 업데이트</p>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및 문구 명확화	<p>나. 과세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1)~2) (생략) 3)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사항]</p> <table border="1" data-bbox="550 1120 979 1890"> <thead> <tr> <th data-bbox="550 1120 651 1155">구분</th> <th data-bbox="651 1120 979 1155">주요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550 1155 651 1507">납입 요건</td> <td data-bbox="651 1155 979 1507">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 (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추 가)</td> </tr> <tr> <td data-bbox="550 1507 651 1890">세액 공제</td> <td data-bbox="651 1507 979 1890">(추 가)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2% · 종합소득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500만원 이하)는 납입액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5% · 종합소득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1억 2,000만원 초과)는 납입액 3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2% 단,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는 2014년 1월 1일 이후</td> </tr> </tbody> </table>	구분	주요 내용	납입 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 (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추 가)	세액 공제	(추 가)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2% · 종합소득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500만원 이하)는 납입액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5% · 종합소득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1억 2,000만원 초과)는 납입액 3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2% 단,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는 2014년 1월 1일 이후	<p>나. 과세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1)~2) (현행과 같음) 3)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사항]</p> <table border="1" data-bbox="992 1120 1423 1890"> <thead> <tr> <th data-bbox="992 1120 1093 1155">구분</th> <th data-bbox="1093 1120 1423 1155">주요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992 1155 1093 1507">납입 요건</td> <td data-bbox="1093 1155 1423 1507">가입기간 5년 이상 (삭 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이내(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1. 연간 1,800만원 2.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이하 "전환금액"이라 한다.)</td> </tr> <tr> <td data-bbox="992 1507 1093 1890">세액 공제</td> <td data-bbox="1093 1507 1423 1890">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이내 1.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2%(지방소득세 포함) ·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500만원 이하)는 납입액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6.5% (지방소득세 포함) (삭 제)</td> </tr> </tbody> </table>	구분	주요 내용	납입 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삭 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이내(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1. 연간 1,800만원 2.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이하 "전환금액"이라 한다.)	세액 공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이내 1.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2%(지방소득세 포함) ·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500만원 이하)는 납입액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6.5% (지방소득세 포함) (삭 제)
구분	주요 내용														
납입 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 (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추 가)														
세액 공제	(추 가)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2% · 종합소득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500만원 이하)는 납입액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5% · 종합소득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1억 2,000만원 초과)는 납입액 3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2% 단,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는 2014년 1월 1일 이후														
구분	주요 내용														
납입 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삭 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이내(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1. 연간 1,800만원 2.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이하 "전환금액"이라 한다.)														
세액 공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이내 1.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2%(지방소득세 포함) ·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500만원 이하)는 납입액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6.5% (지방소득세 포함) (삭 제)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p>납입액부터 적용 (추 가)</p> <p>단,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는 2014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p> <p>연금수령 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이연퇴직소득세액 X 70%' 적용</p> <p>분리과세 한도 연간 1,200만원(공적연금소득 제외, 퇴직소득 제외)</p> <p>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 -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p>	<p>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전환 금액이 있는 경우 전환 금액의 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 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중 적은 금액</p> <p>단,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p> <p>연금수령 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단,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 아래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 적용 1.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인 경우: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70% 2.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60%</p> <p>연금소득 분리과세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연금소득 1. 퇴직 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2. 의료 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연금소득 3. 1호 및 2호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 단, 연 1,2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선택가능 (2023년 1월1일 이후 연금 수령분부터 적용)</p> <p>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 -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 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 필요 시 - 가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p>

(삭 제)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p>※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4)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① 세액공제: 근로자의 추가부담금은 연금저축과 합산(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최대 400만원 이내의 금액)하여 연간 700만원 한도까지 12%(또는 15%) 세액 공제 (추 가)</p> <p>※ 상기 기재된 세율 및 과세관련 사항 등은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 가)</p>	<p>4)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① 세액공제: 근로자의 추가부담금은 연금저축과 합산(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최대 600만원 이내의 금액)하여 연간 900만원 한도까지 13.2%(또는 16.5% 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 단, 퇴직연금계좌 세액공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 분 기준 한도로 작성되었습니다</p> <p>※ 상기 기재된 세율 및 과세관련 사항은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연금 세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https://100lifepan.fs.s.or.kr)의 '연금세제안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기업공시서식개정 반영(23.2.20시행)	가. 요약재무정보 (신 설)	가. 요약재무정보 [기업공시서식개정 내용 반영] - 주식의 매매회전을 - 증권의 대여/차입 거래로 인해 발생한 수익 또는 비용 내역 -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작성일 기준 업데이트	-	업데이트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작성일 기준 업데이트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업데이트
	작성기준일 업데이트	라. 운용자산 규모 -	라. 운용자산 규모 업데이트